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98
----------	------

제출연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12.12.1)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15.10.8)함께 학교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교구성원들을 위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자료제공, 설립상담, 교육 및 컨설팅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 나.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교육부, ’18.8.13.)

## ○ 필요성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상승
  - 교육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18.8.13.)
    - ※ 협동조합 지원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 학교협동조합 시·도지원센터 설치 권고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수립(‘18.7.3.)
- 민간의 전문성 활용하여 체계적 운영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지식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의 체계적 설립·운영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2020.2 ~ 2022.1월)
- 위탁비용 : 318,300천원 (2년간) ※ (‘20년 예산) 158,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위탁업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 유관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관리 및 감독 등 업무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이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세부계획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별첨1)

### 나. 관계 법령(별첨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 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별첨3)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직영 종료('19.12.31.)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I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826, 2018.8.13.
-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관리협의회 심의결과
  - “유사직종으로 통합하거나 민간위탁 방법으로 사업 추진 검토” [노사협력담당관-4208(2019.7.9.)]

### II

#### 추진 필요성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상승
  - 교육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18.8.13.)
  - 협동조합 지원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 학교협동조합 시·도지원센터 설치 권고
    -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19~22년) : ('19년) 1,050백만원(전국), (서울)132백만원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수립('18.7.3.)
- 민간의 전문성 활용하여 체계적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지식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의 체계적 설립·운영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 Ⅲ

## 위탁개요 및 추진경과

###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0.2. ~ 2022.1.(2년)
- 위탁비용 : 318,300천원
  - ※ 위탁비는 예산심의 및 계약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위탁비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운영비 포함
- 센터구성 : 센터장 1명, 컨설턴트 2명(총 3명)
  - 수탁자는 독립된 인력·예산·조직 등을 갖추고 별도의 운영관리규정수립·운영
- 센터위치 : 서울혁신파크 내 21동 3층(은평구 통일로 684)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수탁기관 자격요건
  - 민간위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경험이 있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
  - ※ 복수의 법인, 기관 및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위탁사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 유관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관리 및 감독 등 업무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이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 □ 추진경과

- '15.7.24.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교육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 방안」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전략 및 과제 선정(교육감 결재)
- '15.10.0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16.9.30.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구축 전략 방안 상정
  -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민관협의회」에서 2년 한시적 운영 자문('17~'18년)
- '16.12.23.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방안 수립
- '17.3.01.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개소식 : '17.04.12.)
- '18.8.13. 교육부, 학교협동조합지원계획 반영(학교협동조합 시도지원센터 설치 특교 지원)
- '18.12.27.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지속 운영 계획 수립(교육감 결재)
- '19.5.2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출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근거 마련, 예산지원 등
- '19.7.3. 교육공무직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관리협의회 심의
  - 센터를 “민간위탁 방법으로 사업 추진 검토”
- '19.9.24.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2차) 자문(민간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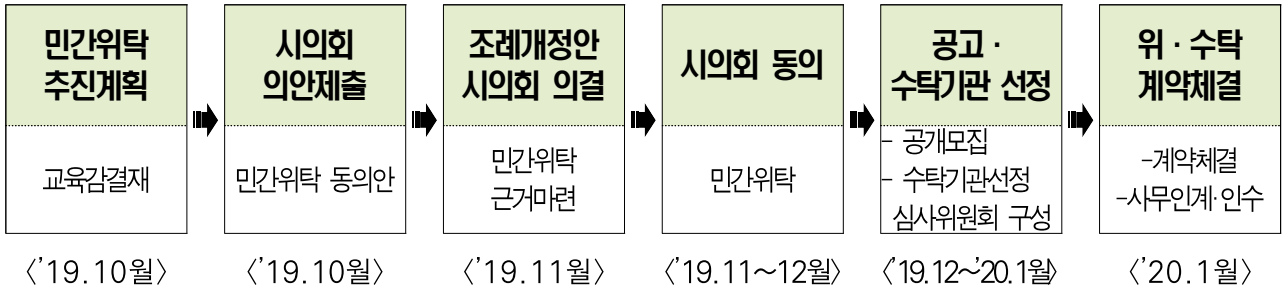
### (현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개요

-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21동 3층, 면적 30㎡)
-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직영)
- ◆ 운영기간 : '17.3.1.~'19.12.31.(종료) (2년 10개월 운영)
- ◆ 운영인력 : 정원 2명(기간제 교육공무직)
- ◆ 예 산 : 77,197천원('19년 예산)
- ◆ 주요사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설립·운영 컨설팅	교육 지원	네트워크 지원	홍보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전화, 방문, 온라인)</li> <li>• 맞춤형상담(법률, 회계 등)</li> <li>• 설립 및 운영 상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조합원 교육</li> <li>• 협동조합 설립준비 교육</li> <li>• 협동조합 맞춤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설립교 네트워크</li> <li>•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li> <li>• 협업 및 네트워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li> <li>• 홈페이지 운영</li> <li>• 실태조사, 총회의사록 공증 지원</li> </ul>

# IV

## 추진 절차



### □ 시의회 협의사항

- 회 기 : 제290회 정례회('19.11.1.~12.20.)
- 사 무 명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추진사항

-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조례상 근거 마련을 위해, 제287회 시의회에 제출한('19.5.24.) 학교협동조합 조례 개정안의 수정·추가 필요(시의회 협의 예정)

조례	조례개정안(제287회)	조례개정안(제290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15.10 제정)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센터 민간위탁 운영 근거 마련 (추가)

### 조례개정(안)

〈기 제 출〉	〈수 정 (안)〉
<p>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p>	<p>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p>

## □ 시의회 동의 후 행정사항

### ○ 수탁기관 선정

-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 수탁기관 선정 기준
  -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 선정절차

① 공개모집 공고 → ② 제안서(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 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④ 계약체결

###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위탁·수탁 계약 체결

-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계약의 체결 등)
- 주요내용
  -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민간위탁의 목적,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계약의 해지
  -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등

# V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18,300천원(2020~21년)

- 위탁운영비 : 316,000천원

· 인건비 196,774천원, 사업비 68,500천원, 운영비 50,726천원

- 사업추진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 2,300천원

※ ('20년 예산) 159,150천원 (위탁운영비 158,000천원, 사업추진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150천원)

○ 세부 내용(2020~21년)

구분	항목	내용	예산(원)	기준
위탁운영비	인건비	센터장	78,349,100	기본급연액, 각종수당, 퇴직금 포함 ※교육공무직인건비지원 기준(교육복지조청자 '19년)
		컨설턴트1	59,212,340	기본급연액, 각종수당, 퇴직금 포함 ※교육공무직원인건비지원 기준(학부모상담사 '20년)
		컨설턴트2	59,212,340	"
		<b>소계</b>	<b>196,773,780</b>	
	사업비	학교협동조합추진학교 교육및컨설팅	12,800,000	'19 교육청 기존 사업 이관
		학교협동조합등사회적 경제동아리운영	13,580,000	"
		학교협동조합운영우수 사례발표회	10,120,000	"
		학교협동조합안내설명 자료,사례집제작	12,000,000	"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10,000,000	'20 신규
		학교협동조합 경영지원	10,000,000	'20 신규
		<b>소계</b>	<b>68,500,000</b>	
		운영비	4대보험료	19,678,220
	업무추진비		3,928,000	인건비총액 X 2% 이내
	운영수당		4,800,000	24개월 X 200,000원
	출장비 및 여비		3,360,000	24개월 X 140,000원
	공공요금(전기, 통신료 등)		3,600,000	24개월 X 150,000원
	사무용품비		3,360,000	24개월 X 140,000원
	복리후생비		4,800,000	24개월 X 200,000원
	임대·관리비		4,800,000	24개월 X 200,000원
	비품구입비		2,400,000	24개월 X 100,000원
<b>소계</b>	<b>50,726,220</b>			
사업추진운영비	운영비	원가계산용역	1,000,000	500,000원 X 1회
		운영수당	500,000	(40,000+10,000) X 5명 X 1회
		<b>소계</b>	<b>1,500,000</b>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사업추진경비	800,000	20,000원 X 10명 X 2회
		<b>소계</b>	<b>800,000</b>	
<b>총 계</b>			<b>318,300,000</b>	



**VI****향후일정**

- 시의회 의안제출 : 2019.10월
- 조례개정안 시의회 의결 : 2019.11월 중
- 시의회 동의 : 2019.11~12월 중
- 공개모집 : 2019.12~2020.1월 중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 : 2020.1월 중
- 위탁·수탁 계약체결 : 2020.1월 중
- 민간위탁 운영 : 2020. 2월

## 【별첨 2】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2016.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보급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 구매 등)**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이용)**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인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학교협동조합
2.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무원

**제12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58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17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3.28.]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5호, 2017. 8. 9, 일부개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별첨 3】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17.3~19.10월 현재]

-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21동 3층, 면적 30㎡)
-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직영)
- ◆ 운영기간 : '17.3.1.~'19.12.31.(종료) (2년 10개월 운영)
- ◆ 운영인력 : 정원 2명(기간제 교육공무직)
- ◆ 예 산 : 77,197천원('19년 예산)
- ◆ 주요사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 ◆ 주요실적 ( '17.3~'19.10월 현재)

역할과 기능	운영 실적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출장(교육, 컨설팅 512건)</li> <li>○ 내부상담(상담, 회의 950건)</li> <li>○ 신규설립 12개교, 추진중 2개교</li> </ul>
홍보 및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협동조합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보급</li> <li>○ 학교협동조합 포럼 운영 : 5회(반기별 1회)</li> </ul>
교육 및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동아리 워크숍 운영 : 3회, 360명 참석</li> <li>○ 조합원·임원 교육 : 17교, 1,420명</li> <li>○ 학교협동조합원의 날 개최 : 2회, 11교 250명 참가</li> <li>○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 : 해냄 프로젝트* 실시(18개팀) *해냄프로젝트 사업 : 청소년들이 사회적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아이디어 기획과 실행, 창업 아이디어 기획 및 실행 프로젝트</li> </ul>
기관 간 협력 및 네트워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협동조합 민·관 협의회 : 10회(분기별 1회)</li> <li>○ 이사장 네트워크 협의회 : 32회(매월 1회)</li> </ul>
기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및 배포 : 2회</li> <li>○ 미래교육박람회 연계 학교협동조합 부스 운영 : 1회</li> </ul>